

# Muan Web Contents

2022년 07월 03일 20시 36분



# 목차

목차	2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3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3
기저귀 지원	3
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3
조제분유 지원	3
신청 기한	4
신청 장소	4
신청서류	4
기본 첨부서류	4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선정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선정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다자녀 행복카드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기저귀 지원

■ 지원대상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 자격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이상)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64천원) 지원

### 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608,000	91,563	54,782	92,499
3인	3,356,000	118,045	109,394	119,032
4인	4,097,000	144,572	140,095	146,207
5인	4,820,000	169,210	172,486	171,393
6인	5,526,000	193,882	205,006	196,955
7인	6,224,000	219,871	238,263	223,722
8인	6,923,000	244,759	269,412	249,469
9인	7,622,000	272,614	303,435	279,532
10인	8,321,000	296,681	330,939	307,50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061-450-5030)

###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사마귀 질병, 사마귀로 무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호처선면역결핍증(HIV), HTLV 감염 등)

- 아동복지시설 · 공동생활가정 · 가정위탁아동, 한부모(부자 · 조손)가정인 경우 (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 분류 지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지원내용 : 기저귀 월64천원, 조제분유 월86천원

## 신청 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개월 모두 지원

## 신청 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읍면사무소, 남약출장소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기존 발급받은 BC카드사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해당카드로 동 바우처 사용 가능

## 기본 첨부서류

1.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2.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 · 육아 휴직시, 소속 직장에서 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3. 가구원 수 확인자료 :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 1~3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4. 영아의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5. 조제분유 지원신청하는 경우, 산모의 질환 또는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아동, 입양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 문의사항 있을 시 꼭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입니다.



MUAN

# Web Contents

 무안군